제384회 국회(임시회)
정 무 위 원 회

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

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

2021. 2. 16.

국민권익위원회

목 차

Ⅰ. 현 황 ·· 1

Ⅱ. 2020년 추진성과 ·· 4

Ⅲ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

Ⅳ. 2021년 핵심 추진과제 ··· 8

1 반부패·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8

2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
3 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··········· 15

4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·· 18

5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·· 22

Ⅰ. 현 황

◇ 「**국민권익위원회**」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, 국가청렴위원회,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('08.2.29.)

※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

1 기 능

부패방지

반부패 · 청렴
- 반부패 · 청렴 정책 수립
- 청탁금지법,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
-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
- 공직자 청렴교육

신고처리 · 신고자보호
- 부패 · 공익신고 처리
- 신고자 보호 · 보상 제도 운영
-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

권익구제

고충처리
- 고충민원 처리, 집단민원 조정
- 민원처리실태 확인 · 평가
-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지원

행정심판
- 행정심판제도 총괄 · 조정
- 행정심판 사건 처리
-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 운영

국민소통 · 제도개선
-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
- 국민소통 창구 운영 (국민신문고, 국민생각함)
- 민원 빅데이터 분석 · 정책환류
- 정부합동 민원 안내 · 상담 (국민콜110)

2 조 직

○ 위원회 : 15인(위원장, 부위원장 3, 상임위원 3, 비상임위원 8)

※ 중앙행심위는 위원장(부위원장 1명 겸임)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(상임위원 4인 이내)

○ 사무처 :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2소속기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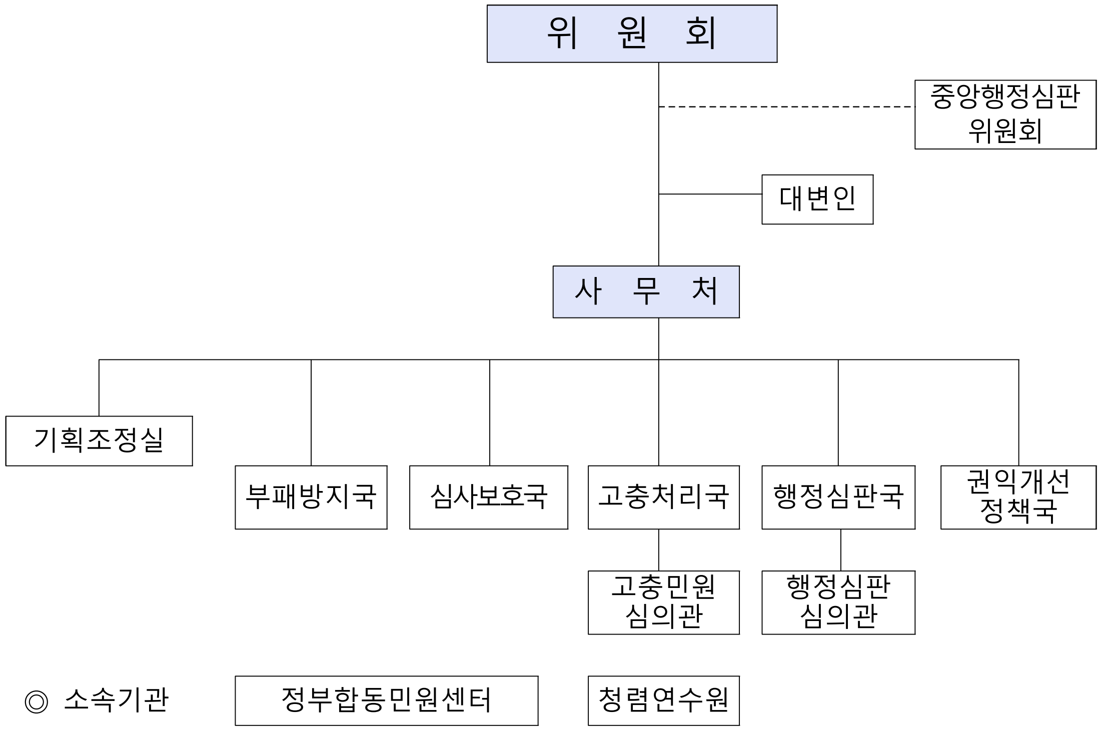

○ 정원 : 558명('21. 1월말 기준)

(단위 : 명)

계	정무직	고공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~9급	전문 경력관	특정직	연구사
558	4	17	14	35	41	203	233	7	3	1

※ 전문경력관: 비상계획(1명), 국제협력(1명), 전문위원(5명), 특정직: 경찰(3명), 연구사: 기록연구사(1명)

※ 파견인력 : 정원내 파견 50명

3 예 산

○ 총 908억원 : 인건비478억(53%), 기본경비 74억(8%), 주요사업비 356억(39%)

※ 주요사업비 : 35,565백만원

- 청렴권익문화확산 ··· 1,618백만원
- 청렴권익행정정보화 ··· 8,861백만원
-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··· 1,055백만원
- 부패·고충제도개선및소통활성화 ··· 10,682백만원
- 국민고충해소 ··· 1,625백만원
- 반부패청렴정책강화 ··· 10,580백만원
- 행정심판 ··· 1,144백만원

4 소관법령

종류	법 령 명
법률 (5)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	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	공익신고자 보호법
	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	행정심판법
대통령령 (8)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	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
	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
	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	행정심판법 시행령
	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
	공무원 행동강령
	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
총리령 (3)	행정심판법 시행규칙
	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	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Ⅱ. 2020년 추진성과

1. 지속적 반부패 개혁 견인으로 국가청렴도 제고

반부패·청렴 수준에 대한 **국내외 인식과 평가 개선**

- 국가청렴도(CPI) : ('17) 54점, 51위 → ('18) 57점, 45위 → ('19) 59점, 39위 → ('20) 61점, 33위**('95년 측정 이래 역대 최고점, 최초 30위권 초반 진입)**
- 공공기관 청렴도 : ('17) 7.94 → ('18) 8.12 → ('19) 8.19 → ('20) 8.27 **(4년 연속 상승)**

□ 범국가적 반부패·청렴 정책 추진체계 확립

○ 대통령 주재 **'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'** 운영 및 **「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」** 이행*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**반부패 협력 제도화**

* 4대 분야·총 85개 단위과제 주기적 점검 등 이행성과 체감을 위한 종합관리 추진

○ 경제·언론·시민사회 등 각계 국민이 참여하는 **'청렴사회민관협의회'**를 중심으로 반부패·청렴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주도

※ 지자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, 기업 내부감사 실효성 제고 등 정책 제안

○ **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**(IACC, '20.12.1~4.)를 최초의 온라인 회의로 성공적으로 개최, **프로그램·참가자수 역대 최대**로 **국제 반부패 논의 선도**

* UN,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 참석, 역대 최대 인원인 전 세계 170만 여명 참여

□ 부패방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강화

○ 국민 눈높이 변화에 따라 **공직자 행위기준을 강화***하고, **「공공재정 환수법」 시행**('20.1월)으로 재정누수 체계적 대응 강화

* 「청탁금지법」 관련 공직자에 대한 부적절한 할인·장학금 혜택 제공 개선('20.8.),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」 제정 추진('20.6. 정부안 국회제출)

○ **채용비리 근절, 공공기관 사규 개선** 등 **주요 부패현안에 대한 전면 점검**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립

※ (채용비리) 1,212개 기관의 '19년 채용실태 점검, 채용비위 83건 적발, 피해자 124명 구제 추진
(공공기관 사규개선) 69개 기관의 8,393개 사규를 전수 점검, 316건의 개선안 권고

2.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

- 신고자 보호건수 : ('17) 17건 → ('18) 35건 → ('19) 72건 → ('20) 81건
- 보·포상금 지급액 : ('17) 42억원 → ('18) 55억원 → ('19) 43억원 → ('20) 55억원

□ 신고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

○ **'공익신고' 대상법률을 확대**하여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('20.11.20 개정·시행)

*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(284개→467개)로 보호대상 공익신고자 범위 대폭 확대

○ 부패신고자의 **신분을 공개한 자**에 대한 **처벌 강화**('20.6.11. 개정·시행)

※ (기존) 3년 이하 징역·3천만원 이하 벌금 → (강화) 5년 이하 징역·5천만원 이하 벌금

□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·보상

○ **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**('20년, 233건) 및 **보호인용률 제고**('20년, 58%), 역대 최다 보상심의위원회 개최(11회)로 신속한 보상금 지급

3. 국민중심·현장중심의 권익구제 및 정책소통 추진

- 권익구제('17~'20년) : 고충민원 66,401건, 행정심판 95,189건 처리

□ 국민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노력 전개

○ 위법·부당하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**고충민원, 행정심판** 사건을 적극 해결하여 **3,658건의 국민권익 침해 해소**

※ 고충민원 시정권고·의견표명·조정합의 2,085건, 행정심판 인용 1,573건('20년)
※ 코로나19 관련 고충·불편 해결을 위한 '국민고충 긴급대응반' 설치·운영('20.9월~)

○ **집단민원의 적극적 조정**을 통해 **사회갈등 해결**(총 53건)

※ 강원도 양구군 무주부동산 문제 해결('20.8.),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요구 해결('20.10.)

□ 개방과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

○ 범정부 소통시스템 **'국민신문고'** 기능 고도화('20.2.) 및 **민원서비스 품질 제고**

○ **민원빅데이터 분석·개방, 국민생각함**을 통한 소통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, 적극적인 정책 환류로 적극적 **제도개선** 추진

※ 소상공인 수도·가스요금 한시적 감면·유예('20.6.), 코로나19 민원분석 및 제도개선('20.4.) 등

Ⅲ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 업무추진 여건

□ **국가 혁신·도약의 토대로서 반부패·공정 기반 강화 필요**

○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확인된 **공적 제도의 투명성** 및 **국민신뢰**를 기반으로 **반부패 개혁을 완수**해 국가청렴도의 획기적 도약을 모색할 시점

○ 특히, **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엄단** 및 **불공정·특권 해소**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적극적 대응 필요

□ **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비상 체계 가동**

○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**고용·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, 코로나 양극화**(corona divide)*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 절실

*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·고용 충격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욱 가중

○ 특히, **청년세대**는 일자리 감소와 함께 플랫폼 노동·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형태 증가에 직면해 **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** 예상

※ 국제노동기구(ILO)는 청년층이 팬데믹에 따른 사회·경제적 결과의 주요 희생자로 일생 내내 이어질 상흔을 입어 '락다운(lockdown, 봉쇄) 세대'가 출현할 것으로 예측('20.5월)

□ **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선제적 대응 추진**

○ **급격한 인구구조 변동***에 따른 **경제·복지·교육** 등 사회 전반의 **충격을 최소화**하기 위한 선제적·전략적 대책 수립 필요

※ '20년에 최초로 국내 사망률이 출산율을 역전,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 ⇒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'20년 이후 10년이 대응책 마련의 골든타임

○ 세계적인 **기후변화**와 **산업구조 변동**에 대비, '2050년 탄소 중립' 달성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**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제도 발굴·개혁** 시급

2 업무추진 방향

◇ **반부패 개혁 완수**로 국가청렴도 도약의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고, **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의 적극 해결**로 범국가적 코로나19 위기 극복 선도

비전	"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,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"		
목표	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	국민이 신뢰하는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	국민고충·사회적 갈등 최우선 해결

주요계획	정책과제
1 반부패·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	▪ **부패**에 대한 **신속·엄정한 대응**
	▪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**공직자 행위기준 정비**
	▪ **불공정 관행 개선**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
2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	▪ **공공부문**의 **청렴 역량 강화**
	▪ **청렴교육 확대**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
	▪ 국가 **청렴수준**에 대한 **대내외 인식도 제고**
3 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	▪ **先 보호-後 검토**로 적극적·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
	▪ **신고 활성화**로 부패·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
4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되는 적극행정 추진	▪ 코로나19 시대 **국민고충 및 권익침해** 최우선 해소
	▪ 범정부 **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** 역할 수행
5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	▪ **사회적 갈등**과 정책 현안의 **주도적 해결**
	▪ **국민의 참여**로 체감도 높은 **정책·제도 완성**

Ⅳ. 2021년 핵심 추진과제

1 반부패·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

1 개 요

○ **국가청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**하고 있으나, **반부패・공정개혁 완수**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

※ 국가청렴도(CPI) : ('18) 57점, 45위 → ('19) 59점, 39위 → ('20) 61점, 33위

⇨ '22년 **국가청렴도(CPI) 세계 20위권 도약**을 위한 기반 마련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(1) 부패에 대한 신속・엄정한 대응

□ 고위공직자 부패 등 권력형 부패 엄단

○ **(협업체계 구축)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접수 시 공수처로 고발·이첩하고,** 공수처 내부 **청렴정책 이행** 지원

※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에 대해 권익위가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기관에 공수처 추가(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, '20.12.10. 국회 통과)

협업사항	▪고위공직자 **부패신고 사건의 공수처로의 고발·이첩·송부** ▪고위공직자 **범죄 수사과정**에서 **제도개선 필요사항 확인** 시 **권익위에 통보**토록 협업체계 구축, 구조적 부패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
지원사항	▪공수처 자체 **청탁금지・행동강령** 제도 운영 지원・감독 ▪소속 공직자 **부패방지 의무교육**(연 2시간) 이행 관리

○ **(집중신고 기간 운영)** 고위공직자 부패 등 **권력형 부패에 대한 부패신고를 적극 유도**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(1~4월)

□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 · 적극적인 대응 강화

○ **(현안 대응)** 사회적 이슈가 되는 **부패 현안 발생** 시 정책수단 및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**즉시 대응체계** 가동, **실태점검** 및 **개선안** 마련

'현안 발생 1주 이내'

부패 이슈 모니터링	▷	현지 실태점검	▷	개선대책 마련 (기관 협의 병행)	▷	결과 발표 및 개선안 후속조치 (권익위, 관계기관 합동)

※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현안의 경우 '**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**'를 통해 실태점검 결과 및 관계기관 합동 개선대책 발표 추진

○ **(사실확인 기능 보완)** 피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보강을 통해 **신고 사건에 대한 대응력 강화**, 신고사건 처리의 **실효성 제고**

* 피신고자, 관계기관 등에 진술청취·자료제출 등 요구(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국회제출, '20.6.)

□ 지자체 · 공공기관 부패관행 개선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

○ **(취약분야 집중점검) 지방 현장**에서 부패가 **빈발하는 취약분야***를 발굴하여 **집중적 실태점검**을 실시(격월), 고질적 부패관행을 개선

* (예시) 민간위탁 업무에 공직자 재취업으로 인한 관리·감독 부실, 공무직 특혜채용 등

○ **(공공기관 사규 점검)** 공공기관 사규 전수점검 3개년 계획('20~'22)에 따라 **기금관리형 ·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**(99개) 사규 **부패영향평가 실시**

※ 민간과의 계약·위탁 등에서 직권·재량남용, 소극행정 유발 요인 중점 점검·개선

○ **(평가 확대) 대국민 접점**인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사 · 공단, 지방의회에 대한 **청렴수준** 및 **반부패 노력도 진단·평가 강화**

※ 소규모 기초의회와 주민생활 밀접 지방공사·공단(철도·교통·시설관리 등) 청렴도 측정 확대, 부패방지시책평가 대상 기초지자체 확대('20년: 인구 50만 이상 → '21년: 40만 이상)

○ **(행동강령 이행 강화)** 행동강령 조례 **미제정 지방의회**(13개) 대상 조속한 제정 촉구,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대상 행동강령 교육* 실시

* (주요내용) 수의계약 체결 등 선출직 공직자 위반 빈발 행위,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겸직 및 소관 상임위 활동 관련 이해충돌 사례 중심

(2)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정비

□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조속한 입법화

○ **(입법 추진)**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('20.6. 국회제출)」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 **법안심사 적극 지원, 쟁점해소**를 위한 **선제적 대응**

※ 쟁점사항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례분석,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정부안 보완 필요사항(예 :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방식)은 의원입법 지원

○ **(공감대 확산) 입법 필요성**에 대한 **국민 공감대 확산**을 위해 인터뷰, 기고, SNS 홍보 등 온・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**다각적 홍보** 전개

□ 청탁금지법 규범력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

○ **(사각지대 입법 완비)** ①부정청탁 금지 대상직무 추가, ②공직자의 민간부문 청탁 금지 등 법 **미비점 보완**을 위한 **개정** 추진

○ **(과태료 부과 누락 등 개선)**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업무를 권익위가 담당하도록 법 개정 추진

※ 현재는 소속기관장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함에 따라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**과태료 부과 여부 및 액수 등에 차이** 발생

○ **(실태점검 강화)** 청탁금지법 **위반행위 관련 이슈, 공직자등에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 관행**에 대한 지속적 **실태점검** 및 개선안 마련

※ (예) 학교 촌지·불법찬조금 수수,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 휴양시설 이용 특혜 제공 등

□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

○ **(사전심사제 도입)**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**사전확인 의무화** 및 **'비위면직자 취업심사위원회'** 설치 추진 검토(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)

※ 법 개정 전이라도 위반자 발생 방지를 위해 각급기관의 사전 취업심사 요청 시 '취업제한 자문위원회'를 통한 검토의견 제시 등 적극 지원

○ **(관리 사각지대 개선)** 비위면직자 발생시 권익위에 관련 자료 제출 및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비위면직자 확인을 의무화해 위반자 발생 방지

(3)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

□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로 재정누수 방지

○ **(합동 점검단 구성)** 코로나19 지원금 등 확대에 따른 **재정건전성 제고**를 위해 '**정부합동 점검단**'을 구성, 부정청구 **취약분야 집중 점검**(2~12월)

○ **(부정청구 통합관리 시스템)** 기관별 공공재정 현황 및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금액, 환수율 등 자료를 시스템으로 관리, **대국민 공개**(3월~)

※ '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'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 기능을 탑재, 운영

○ **(적용대상 확대)**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 **공공계약까지 포함** 되도록 하여 공공재정환수제도의 **사각지대 해소**, 실효성 확보

※ 정책연구용역 실시(2~6월), 법 개정안 마련 · 국회 제출(12월 예정)

□ 제도 속에 내재된 구조적 부패 · 불공정 유발요인 개선

○ 정부의 **신뢰성을 저해**하는 구조적 **부패·불공정 유발요인**을 발굴·개선하고, **공동체 가치를 훼손**하는 국민 **일상 속 불공정** 해소

분 야	**개선과제**(예시)
불합리한 관행·유착	- **군납계약**의 경쟁입찰 확대 등 **폐쇄직역에서의 특혜·독점** 및 이해충돌 방지
	- 하도급 계획서 사전심사 도입 등 **관급공사 감리제도** 불공정 개선
재정집행 실효성 제고	- **정책자금 중복·반복지원** 방지, **부실 심사** 및 감독 방지 등 관리 강화
	- 재량사업 내역 공개 의무화 등 **지방의원 포괄사업비 투명성** 제고
일상 속 불공정 개선	- 시설면적·설립요건 강화 등 **요양원·요양병원 공공성** 강화
	- 적격심사 보완, 불법행위 등록기관 통보 등 **공동주택** 비리 방지

□ 채용비리 근절대책 지속 추진으로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향상

○ **(정기조사)** '20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추진('21년 중, 1,516개 기관), 신규채용 · 정규직 전환과정의 비위, 제도개선 이행실태 등 중점 점검

○ **(수시점검)** 채용 요건 일방변경, 채용 특혜 발생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현장점검 및 즉시 조치 해결

[2]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

1 개 요

○ '포스트 코로나' 시대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**반부패·청렴 문화의 확실한 정착**으로 지속가능한 **성장동력 확보** 필요

※ 한국의 국가청렴도 10점 상승시 1인당 GDP 성장률은 0.5%p 증가(서울대, '17.12월)

⇨ 범정부 차원의 청렴정책 추진을 넘어, **미래세대 청렴인식 제고** 및 기업 등 **민간분야의 공정성 확산**을 위한 중장기 전략 필요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(1) 공공부문의 청렴 역량 강화

□ 반부패 정책의 범정부적 총괄·조정 강화

○ **(반부패 총괄기구 위상 재정립)** 위원회 **조직을 부패방지 중심으로 개편**하고, **반부패 기능을 강화**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에 역량 집중

※ 관련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, 「행정심판법」 개정안 국회 정무위 계류중('20.6. 정부안 제출)

< 주요 내용 >

○ **(조직 개편)** 조직을 **부패방지 기능 중심으로 재편**하고 기관명칭을 '**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**'로 변경,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 변경(권익위 → 국무총리, 법제처장이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)
○ **(부패신고 사실확인 기능 보완)** 신고사건의 이첩·고발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**피신고자, 관계기관** 등에 대한 **진술청취 및 의견·자료제출** 요구 기능 명시
○ **(반부패 민간협력 강화)**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된 **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·운영**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반부패·청렴 정책 추진 시 국민참여 활성화

○ **(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)** 국민적 관심이 큰 **부패·불공정 현안** 또는 **구조적 부패취약분야**에 대한 '범정부 상시대응체계'로서 역할 강화

※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기획과제 발굴 및 현안이슈 신속대응을 위해 실무 협의회 활성화 (현안발생 시 수시 운영)

○ **(감사관회의 확대) 이슈별·계기별** 감사관회의 **운영 확대**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반부패정책에 점검을 강화하고, **부패대응 역량 강화**

□ **청렴수준 평가제도의 객관성·신뢰성 제고**

○ **(청렴도측정)** 청렴도측정 제도('02년~) 도입 20주년 계기, **국민이 공감**하고 **공직자가 변화**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편 추진

※ 측정 실효성에 따라 측정주기를 다양화 하는 등 대상기관 재검토, 부패취약업무 신규 측정, 부패사건 현황 등 객관적 지표 강화 방안 등 검토

○ **(부패방지시책평가) 기관장·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** 평가를 강화하고, 부패 **현안 발생** 시 **대책마련·시행 여부**를 **가감점**으로 반영

(2)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

□ **청렴교육의 전방위적 확대를 통한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제고**

○ **(선출직 공직자)**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**청렴리더십 향상** 및 **청렴역량 개발**을 위한 **교육콘텐츠 개발·제공** 등 청렴교육 **지원 확대**

※ 행안부 등 관계부처, 지방의회와의 MOU체결, 간담회 등을 통해 청렴교육 협의·지원

○ **(고위공직자)** 장·차관 등 중앙부처 **고위직 대상 이해충돌, 갑질** 등 **사례중심의 청렴교육 자료** 제작 및 **청렴연수원 교육이수** 확대

※ 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 신고방법, 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고위직 맞춤형 사례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

○ **(他교육훈련기관)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**(총 112개 기관)의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목에 **청렴교육을 반드시 포함**하도록 확대 추진

※ 청렴교육과정을 단독과정으로 운영 또는 타 과정에 청렴과목 편성토록 협의(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 '민관 교육발전협의회'를 통해 단계적 확대 추진)

○ **(미래세대)** 향후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초·중등 교과과정 또는 자유학기제에 연계한 청렴교육 확대 방안 마련

※ 현재는 초·중·고등학교 대상 청렴교육은 '민주시민 교육'의 일부 소단원으로만 구성

□ 청렴교육의 법적·제도적 인프라 공고화

○ **(교육 이행력 확보)**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이수현황 등 결과공개 근거, 교육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등 후속조치 근거 신설

○ **(청렴교육 확산 기반 마련)** 학생·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실시 근거 등 교육확산 기반 마련, 청렴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체계 마련 등

※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 또는「청렴교육지원법(안)」제정 등 방안 검토 및 추진

○ **(청렴교육 전문성 강화)** 청렴교육정책 및 청렴콘텐츠 연구·개발 전담부서 신설, 교육시설 증축 등 교육운영 여건 개선 추진

(3) 국가 청렴수준에 대한 대내외 인식도 제고

□ 국가청렴도(CPI)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

○ **(전략적 대응)** CPI 평가 시 우리나라의 **실제 청렴수준이 평가에 반영**될 수 있도록 **평가체계 관련 의견**(객관적 실태지표* 추가)을 TI에 제시

* 국제예산협의체(IBP) 예산투명성 지수, TRACE International의 뇌물 매트릭스 등

○ **(IACC 성과 홍보)**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('20.12월) 개최 성과를 G20, OECD 등 협의체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CPI 제고 계기로 활용

※ IACC 회의 내용과 성과, 온라인화상회의 운영 노하우를 포함한 영문백서 제작·홍보

○ **(반부패 우수사례 전파)**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 기업인 및 평가기관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성과 및 우수사례 홍보

※ (예시) 코로나19 대응 등 K방역 성과,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운영 성과 등

□ 국민과 함께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

○ **(청렴사회민관협의회)** 국민의 시각에서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이슈*에 선제적으로 대응, **반부패 의제 공론화 기능** 강화

* (예시) 대학입시 투명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, 민간위탁 투명성 제고 등

○ **(윤리경영)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**으로 기업**윤리경영 교육을 확대**하고,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반부패프로그램 발굴·확산

③ 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

1 개 요

○ 신고자보호 관련 법·제도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나, **국민 눈높이**에서는 **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**

※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분공개, 처리절차 지연 등 보호·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국회, 언론 등의 지적

⇨ 신고자를 보다 **적극적, 선제적으로 보호**할 수 있도록 **법·제도의 획기적 개선** 추진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(1) 先보호-後검토로 적극적·선제적 신고자 보호 강화

□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 강화

○ **(불이익조치 일시정지 제도 보완·확대) 부패신고자**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**요건을 완화***하고, **공익신고**에도 **제도 도입**

*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향

현 행	개 정 안
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 필요	일시정지 결정시에는 고려하지 않음
정지기간 최대 45일	신분보장등 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
'회복하기 어려운 피해', '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 없음' 필요	해당 요건 삭제

○ **(사전보호 전담제) 잠정적 보호조치**가 필요하거나 **급박한 신변보호요청** 등이 있는 경우 사전보호 전담 직원 지정·운영

○ **(신고자 신속 보호)** 신고자·협조자에 대한 신분 비밀보장의무 위반 조사 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**조사 범위 확대*** 및 **제재규정(과태료) 신설**

* (부패신고) 현행: 관계기관 → 개선: 관계기관·단체·기업, 참고인 등
  (공익신고) 현행: 공익신고 접수기관 → 개선: 관계기관·단체·기업, 참고인 등

○ **(신분공개 피해 방지)** 신고자 **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·보도**된 경우,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위원회의 관련 **기사 게재중단 등 요청** 근거 신설

※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

○ **(구조금 지원 확대)**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쟁송뿐만 아니라 무고·명예훼손 등 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에 대해 구조금(변호사비용 등) 지급

*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('20.12.28.)

○ **(보상금 신청기간 연장) 공익신고 보상금** 지급신청 기간을 현행 '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'에서 **'3년 이내'로 연장**

※ 현재 '**부패신고**'는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**3년 이내**에 지급 신청 가능

□ 신고자 보호결정의 이행력 강화

○ **(이행절차 간소화)** 권익위의 **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**한 자에 대한 **신속한 제재**를 위해 **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간소화**

*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위원회 심의절차를 2회에서 1회로 축소

○ **(이행력 확보)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**에 대한 **명단공표** 근거를 신설하고, **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**

* (현행) 매년 2회, 이행 시까지 회당 **최대 3천만 원** → (개선) **회당 최대 1억원**

○ **(징계제도 개선)** 중앙부처·지자체·공직유관단체 대상 **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여부** 실태조사 후 징계제도 개선 권고

※ 실태조사(2~5월), 개선안 마련 및 관계 기관 협의(6~8월), 개선 요청(9월)

(2) 신고 활성화로 부패·공익침해행위 발생 차단

□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사례홍보 강화

○ **(집중신고기간 운영)** 시기별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패·공익침해행위 등 **불법행위**를 집중 단속하고 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

분야(예시)	신고대상	시기
권력형 부패	고위공직자 부패행위 등	1~4월
정부보조금	코로나-19 지원금, 연구개발비, 지방보조금 등	3~5월
신규 공익침해행위	병역법, 대리점법, 수입식품법,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위반 행위	5~6월
안전 분야	건설 자격증 불법대여, 부실공사, 소방시설 미비 등	9~10월

* 현안이나 이슈가 되는 사안 발생 시 집중신고기간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 운영

○ **(사례홍보 강화) 중요사건 조사결과, 신고자 보호제도 위반 처벌사례, 고액 보상사건** 등 홍보를 통해 **부패·공익침해행위**에 대한 **인식 제고**

※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 병행

-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유가보조금 등 **주요 부정청구 사례** 관련 보도자료 배포, **SNS 홍보** 실시

  * 어린이집연합회(보육보조금)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(유가보조금) 등 공공재정 수급 직종별 협회·단체 대상 교육·홍보자료 제작·배포

□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10주년 계기 사회적 인식 제고

○ **(토론회 개최)** 법 시행 **10년 성과분석** 및 **제도 발전방안 모색**을 위해 연구용역 및 토론회를 통해 학계·언론·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추진

* 법 시행 10년간의 제도 운영성과 분석, 공익신고 대상 및 내부신고자 보호 확대 재설계 방안 등 검토

○ **(우수사례 선정)** 법 시행('11.9.30.) 이후 '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, 보·포상 사례(가칭)' 선정·발표 통해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

※ (선정방법) 각급기관·시민단체 신청을 받아 **국민생각함을 활용**하여 선정

4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

1 개 요

○ **코로나19**로 인한 경기악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, 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 **취약계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** 요구

※ 통계청 조사결과, 코로나19 이후 '임금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'가 응답자의 절반인 49.7%에 달함(한국의 사회동향 2020, '20.12.)

⇨ 권익위의 기능과 역량을 결집해, **민생 현장과 사회적 약자 중심의 권익구제**로 국민고충 최우선 해결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(1)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 최우선 해소

□ 소외·취약계층 고충해소 및 긴급 고충현안에 대한 대응 강화

○ (이동신문고)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**소외지역과 취약계층**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**지역형·맞춤형 이동신문고 전방위적 확대 운영**

< '21년 이동신문고 운영 방안 >

유 형	대 상	운 영	횟 수
지역형 이동신문고 (소외 지역)	· **전통시장, 관광지, 다중이용시설 밀집지** 등 코로나19 피해 심각지역 및 **농·산·어촌** 등	· 긴급 생활자금 지원 등 코로나 관련 고충 중점 청취·해결	· ('20) 33회 → ('21) **40회**
맞춤형 이동신문고 (취약 계층)	· 쪽방촌, 노후 임대아파트 등 **복지·주거 취약계층**	· 고용·사회안전망 사각지대, 열악한 주거환경 등 관련 고충 상담·해결	· ('20) 45회 → ('21) **64회**

⇒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'찾아가는 현장 신문고'를 '20년 78회에서 '21년 104회로 대폭 확대(33.3%↑)

○ (기업고충 해소) **중소기업** 밀집지역 대상 **'기동해결 특별컨설팅'** 운영 및 **소상공인·자영업자** 고충 청취로 **위기 기업 맞춤형 고충해소** 추진

* (대상) 자동차 부품, 기계 소재 등 소재·부품·장비 관련 산업·농공 단지 등
(내용) 영업정지,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 상담·해결
(운영)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12회, 소상공인·자영업자 간담회 10회(총 22회)

○ (고충현안 긴급대응) 대규모 **인명·재산 피해***나 코로나19 등으로 단기간에 **현장민원 급증** 시 **'국민고충 긴급대응반' 운영** 등 즉각적 해결 체계 가동

* 태풍·집중호우, 산불·대형화재, 화학물질·환경오염 등 각종 사건·사고

□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신속·공정한 행정심판 운영

○ (국선대리인 지원 확대) 국선대리인 신청 **소득기준 완화**(270만원→300만원), 코로나19 피해가 큰 **소상공인*도 지원, 국선대리인 수 확대**(70명→100명)

* **일정 매출액 이하 소상공인**을 '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'에 포함하여 지원(「행정심판법 시행령」 제16조의2)

○ (신속성·인용률 제고) **단순·반복적 심판청구**의 **재결기간을 단축**하고, '위법' 뿐 아니라 **소극행정 등 '부당'한 처분**에 따른 권익침해도 **적극 인용**

□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심판위원풀(Pool) 확대

○ (전문인력 보강) 현행 비상임위원에 환경·산업·노동 등 **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추가 위촉** 추진(65명→150명)

※ (참고)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150명의 비상임위원을 위촉·운영

○ (사건 검토 강화) **복잡한 전문사건** 증가 추세에 **대응**하고, **심도있는 사건 검토**를 위해 상임위원 증원(3명→4명, 행정심판법은 4명 이내로 규정)

※ 중앙행심 상임위원 3명(1인당 연평균 6,174건, 5개년 평균),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8명(1인당 연평균 1,442건), 소청심사위원회 4명(1인당 연평균 199건)으로 구성

(2) 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

□ 국민신문고·110콜센터를 통한 대국민 민원·상담서비스의 책임성 강화

○ (이용기관 확대) **지자체·사립대 민원처리기능**의 **국민신문고 통합**을 **단계적으로 확대**하여 대국민 **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**

※ (지자체) 71.2%(171/243) 통합('20.12. 기준), 10개 지자체 추가 통합('21.상)
(사립대) 5개 대학 시범운영('20.12.~), 328개 전체 사립대 민원기능 통합('21.하)

○ (소극행정 예방강화) **소극행정신고센터** 접수 민원*의 유형, 빈발 분야, 발생원인, 처리실태 등을 **종합 분석**해 **예방대책** ** **수립**

* △'19.3. 소극행정 신고센터 개설 이후 접수된 6만여건 중 각 기관 감사실에서 소극행정으로 판단한 건은 약 2%(1,240건)에 불과, △유형별 판단기준 확립 필요

** 발생원인(제도미비, 관행, 업무행태 등)에 따라 제도개선, 교육, 컨설팅 등 실시

○ (민원서비스 개선) 이송사유 등 **'민원이력 조회기능'을 신설**('21.3.)해 처리 회피·지연을 방지하고, 끝까지 책임지는 **'민원 정책알림 서비스'*** 제공(~'21년말)

* '민원 관련 정책알림 서비스' 개요

- (필요성) 민원은 법령에 따라 **7~14일 이내에 답변·종결** 처리되나, 이후 실제 민원과 관련된 **제도·정책 변경 등 실질적 조치는 피드백이 되지 않는 한계**
- (주요내용) **민원 신청 내용**과 관련된 **정책·제도의 개선사항, 추진현황** 등 정책정보를 수집해 SNS·이메일을 통해 **민원인에게 자동 제공**

○ (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) **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**하여, **빅데이터 활용·AI자동상담**을 통해 24시간×365일 중단없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(~'23)하고, 범정부 안내시스템 **'국민비서'와도 연계**

< 추진 일정 및 예산(총 298억, 2개년) >

'22년 1차 구축(180억)		**'23년 2차 구축**(118억)
클라우드 기반 콜센터 **시스템 통합· 안정화** (부처, 소속기관 등 41개)	→	AI도입 등 **기능 고도화**, 시스템 **통합 확대** (부처, 산하기관 55개)

* '20년 BPR/ISP(7.1억) 및 75개 정부 콜센터(통합대상 96개 중 78.1%) 동의 완료

□ 권익위의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로 고충해결의 사각지대 해소

○ (경찰옴부즈만 내실화) **검·경 수사권 조정**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 대응하여 **적극적 옴부즈만** 역할* 수행

※ 경찰분야 민원 접수 현황 : '18년, 733건 → '19년, 1,579건 → '20년, 1,784건

* 불합리한 수사절차·행태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적극 처리

○ (검찰옴부즈만 도입) 검찰의 **위법·부당한 수사 절차·행태** 등과 관련된 **고충민원 처리 추진**

※ 「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」 제17조 소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검찰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 추진중('20.11월 입법예고 완료,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중)

○ (빈발민원 분야 역할 강화) **기업, 금융** 등 국민적 요구가 높거나 **고충민원이 증가**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고충처리 역량 집중

□ 중앙(권익위)-지방(지자체) 간 분업·협력을 통한 촘촘한 고충 해결

○ (분업) **국민권익위원회-시민고충처리위원회**(지자체)가 **민원 특성**에 따른 처리영역 전문화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**처리·해결**

국민권익위원회(중앙)	⇄	**시민고충처리위원회**(지자체)
■ **전국** 단위 민원, **집단·현안** 민원 등		■ **지역** 생활 불편, **건의** 민원 등

※ **분업 표준모델을 개발**해 우수 운영 지자체(울산광역시, 경기 파주·시흥시 등)와 **시범운영 실시('21.상)** 후 전국 확대 추진

○ (지원·협력) 지자체별 **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**를 지원하고, 중앙-지방 간 일관성 있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**교육·컨설팅*** 확대

* 고충민원 처리역량 교육 제공, 신설 예정 지자체에 대한 조례제정·운영 컨설팅 등

5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

1 개 요

○ **정책의 전 과정**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직접적 **국민 참여 요구**가 높아지는 가운데, 본격적인 **'비대면 시대'가 도래**하면서 온라인 소통 창구에 제기되는 **국민의 목소리도 증가**할 것으로 예상

※ (국민신문고 민원) '18년, 473만건 → '19년, 799만건 → '20년, 957만건
(국민생각함 참여) '18년, 16만회 → '19년, 23만회 → '20년, 35만회

⇨ 범정부 정책 소통·참여 플랫폼 **국민신문고, 국민생각함**을 통해 아래로부터 민원과 고충을 수렴하여 **국민이 체감하는 정책·제도 구현**

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

(1)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의 주도적 해결

□ 집단민원 중점 해결 및 집단민원조정법 조속 제정

○ (집단민원 해결) 다수기관이 관련돼 **민-관, 민-민 갈등**이 **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표류중**인 집단민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해결방안 마련

- 특히, **100인 이상**이 관련된 **집단민원**은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에 이송하지 않고 **권익위가 직접 조정** 추진

※ '20년 한 해 총 8,447건의 집단민원이 제기(중앙부처 1,206건, 지자체 7,059건), 이 중 100인 이상 집단민원은 1,837건(21.7%)

※ 전국 빈발 집단민원 사례

- **신도시 생활기반시설** 미설치로 인한 입주 후 생활불편
- **무단폐기물** 투기에 대한 토지소유자 대상 **처리비용 전가**
- 전국 **한센인촌 주거·환경** 사각지대 개선 등

○ (법제화)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**집단민원을 객관적·전문적으로 조정 해결**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**「집단민원조정법」 조속 제정**

※「집단민원조정법안」 2건 정무위 계류중

< 집단민원조정법안 주요내용 >

○ **(조정 전문인력 확충)** 민간 **조정전문가, 전문직** 종사자 등을 **조정인**으로 위촉해 일정 규모 이상의 **집단민원(100인 이상)을 전담** 조정 해결
○ **(조정 대상 확대)** 민원인뿐만 아니라 **행정기관도** 권익위에 **소관업무와 관련한 집단민원의 조정을 신청**할 수 있는 권한 부여
○ **(선제적 집단민원 대응) 긴급**하고 **사회적 파급효과**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**민원신청 전**이라도 **실태를 확인, 조정 절차에 착수**하여 분쟁·갈등 확산 방지

□ 주요 현안민원에 적극 대응

○ (현안민원 해결)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**다수부처 관련 민원, 중대 현안 민원** 등은 신속히 **조정·해결**하여 갈등 확산 사전 차단

-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관별 **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**하고 미이행 시 **언론공표, 국무·차관회의 보고** 등을 통해 이행력 확보

※ '21년 처리예정 주요 현안 민원

- **포항 수성사격장** 주한미군 헬기사격 반대 및 사격장 폐쇄
- 완공 후 **미사용** 통영 소매물도·제승당·비진외항 3개 **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**
- 전국 **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** 대책 마련 등

(2)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·제도 완성

□ '국민생각함'을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

○ (열린 공론의 장 운영) 주요 **정책이슈·갈등현안**을 적시에 포착해 **국민생각함 토론의제**로 제시하고, 수렴된 국민의견에 기반한 **정책 변화** 유도

※ **온라인**(국민생각함 토론·설문조사) - **오프라인**(간담회·현장 의견청취) 동시 대응을 통해 현안별로 다양한 국민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·분석해 **정책제안 실시**

< 국민생각함 기획토론 과제(예시) >

- **(환 경) 2050 탄소중립** 추진 협업(**수소충전소 구축 전략** 수립 등)
- **(복 지)**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확산 등 **장애인 이동권 보장**
- **(과학기술) 코로나 시대 온라인 소외계층** 보호(**디지털 포용** 정책)
- **(노 동)** 특수고용근로자 등 **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**
- **(생 활)** 한부모 가족 **아동 양육비 이행** 강화 등

○ (정책환류 강화) **국민이 참여·공감하면 권익위가 개선**하는 '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, 권익위가 바꿉니다' 프로젝트 추진

- 제도개선 권고가 아니더라도, **조속한 정책 반영** 및 **기관 자율 개선**을 위해 현안과제에 대한 **정책제안 제시**

○ (참여 방식 다양화) 청소년·대학생 **참여 프로그램,** 사회현안 관련 **찬/반 설문** 및 **공공캠페인**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획 확대

※ (청 소 년) '국민생각함, 청소년·청년 정책개선 아이디어 공모전' 실시
(대 학 생) '국민생각함,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정책참여' 전국 확대
(일반국민) '사회현안 3초 공감(찬/반, 택1 등)' 이벤트, 공공캠페인 추진 등

□ 민원 빅데이터 분석·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

○ (기획분석) **사회안전망** 강화, **포스트 코로나** 및 **2050 탄소중립** 등 국정 방향 관련 데이터 분석으로 체계적 정책 추진 지원

< 민원분석 주제(예시) >

분 야	분석 주제
사회안전망	‣ 가정 내 아동학대 등 취약·소외계층 보호 ‣ 실업급여·긴급생활안정자금 등 경제적 약자 지원
포스트 코로나	‣ 드라이브 스루,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문화 관련 ‣ 초등돌봄(방과후수업·돌봄교실 등) 운영 개선
탄소중립	‣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'전기·수소차' 이용 불편 개선 ‣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관련

○ (데이터 개방 확대) **국민**(산·학·연)**이 민원 데이터를 직접 분석**해 각종 연구·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**'원격 민원분석 플랫폼'** 구축 추진

※ '21년 :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(BPR/ISP) 수립 → '22년 : 플랫폼 시범 운영 → '23~'24년 : 플랫폼 고도화 등 확대·활성화

○ (데이터 연계 강화) 민원 데이터와 주요 **공공데이터 간 융복합***, 학계·전문기관과의 **공동연구** 확대**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

* 국민건강(복지부), 자동차(국토부 등), 소비자안전(공정위), 인구(행안부), 사회보장(복지부), 음식물·쓰레기(환경부) 등 국민생활 관련 데이터

** (예시) 포스텍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('20.6.)

□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및 실질적 이행력 제고

○ (제도개선 강화)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**4대 안전망 강화, 사회·경제적 구조 전환** 대응관련 정책·제도 적극 개선

< 제도개선 주제(예시) >

분 야	문제점	개선과제(예시)
4대 안전망 강화	**<생 계>** · 공공기관이 **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세금**으로 부담금 납부	⇨ 의무고용률 평가 확대 등 **장애인 고용** 촉진제도 실효성 제고
	· 청년공제 재가입 불가로 **불리한 근로조건** 감내	⇨ 재가입 요건 확대 등 **청년내일채움공제** 공정성 제고
	<의 료> · 최저보험료 체납자 **건강보험 압류**, 분할납부 승인 취소	⇨ 압류 예외요건 확대 등 **건강 보험료** 체납자 반복민원 해소
	· **장기기증 부족**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 및 불법거래	⇨ 장기기증자 건강검진 확대, 예우 강화 등 **장기기증** 사후관리 개선
	<주 거> · 주택 매매가·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**중개수수료 부담** 가중	⇨ 거래금액별 보수요율 산정 등 **주택 중개보수** 산정체계 개선
	· **임대주택 입주**에 필요한 소득기준 등 **자격기준 불합리**	⇨ 자격기준 현실화 등 **청약·공공 임대주택** 공급 관련 불합리 개선

분 야	문제점	개선과제(예시)
	<교 육> · 초등돌봄교실 법률근거 미비로 **안전 문제, 프로그램 질 저하**	⇨ 법률근거 마련, 부처별 연계 강화 등 **초등 돌봄교실** 운영 내실화
사회 변화 대응	· 라이브커머스는 ‘방송’에 해당하지 않아 **허위광고 심의불가**	⇨ 심의기준 마련, 플랫폼 책임강화 등 **라이브커머스** 소비자 보호
	· 태양광 발전 설치 관련 **지자체 입지규제** 국민고충	⇨ **태양광 발전** 설치·운영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
	· 안전을 위협하는 **전동킥보드**, **전기자전거**의 단속방안 모호	⇨ 지자체 등록, 인식표(번호) 부착 등 **개인형 이동수단** 안전 강화

○ (이행력 제고) 제도개선 권고 사항이 신속히 이행되어 국민들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, **‘제도개선 이행현황 상시 점검체계’* 구축**

* ①(언론보도 등 문제포착) 권고 미이행, 부패·고충 지속발생 → ②(권익위) 이행조치 요구 → ③(소관기관) 조치계획 제출 → ④(권익위) 이행점검 → 우수사례 홍보

※ ’20.6월 기준 제도개선 이행률은 83.9%로, 이행미흡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·차관회의 보고, 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행력 제고 노력 강화